[양식 제19호]

(사 망		고 서 ^{월 일)}			뒷면의 작성 방법 시하기 바랍니다.]을 참고하고, 선택항목에는	
① 사 망 자	성명	*한글			성별			
		한자	(성) / (명)		1남 2여	*주민등록번호	_	
	등록기준지							
	*주소					세대주·관계	의	
	*사망일시	년 월 일 시 분 (사망지 시각: 24시각제로 기재)						
	*사망장소	장소						
		구분	 주택 사회복지시설(* 도로 산업장 병원 이송 중 기타(,	아원 등)	② 의료기관④ 공공시설(학교,⑥ 상업·서비스시설⑧ 농장(논밭, 축시	(상점, 호텔 등)	
2	기타사항							
③ 신 고 인	*성명				① 또는 서명	주민등록번호	-	
	*자격	[1]동거친족 [2]비동거친족 [3]동거자				*관계		
		④기타(보호시설장/사망장소관리자 등)						
	주소					*휴대전화번호 등	_	
			_			이메일		
4	제출인	성명				주민등록번호	_	

[※]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.

인구	² 동향조사					
⑦ 최종졸업학교	① 학력 없음	② 초등학교 ③ 중학	교 4 고등학교	5 대학(교)	6 대학원	이상
· 혼인상태	미혼	② 배우자 있음	③ 이혼	4 사별		

※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.

읍면동접수	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	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
	년 월 일(인)	

[※]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<u>형법에 의하여 처벌</u>받을 수 있습니다. <u>눈표(★)로 표시한 자료</u>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.

[※] 아래 사항은 <u>「통계법」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.</u> 「통계법」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 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작 성 법

※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· 등록기준지: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① 사 망 자
- 주민등록번호: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 니다.
 - ·사망일시 : <예시> 오후 2시 30분(×) → 14시 30분(○). 밤 12시 30분(×) → 다음날 0시 30분(○)
 -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,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, 서머타임 실시기 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"(서머타임 적용)"이라고 표시합니다.
 - ·사망장소 구분 : 🗓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·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10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, 선박,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
 - ·사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(시구의 '동', 읍면의 '리') 또는 도로명주소의 '도로명'까지만 기 재하여도 됩니다.
- ② 기타사항
- ·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③ 신 고 인
- · 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'영표(○)'로 표시하되 4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.
- ④ 제 출 인
- ·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를 기재합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- ※ 아래 사항은 「통계법」 제24조의2에 의하여 **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**입니다.
- ⑦ 최 졸업학교
- •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, 각급 학교의 재학 (중퇴)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'영표(○)'로 표시를 합니다. <예시> 대학교 3학년 재학(중퇴) → 4 고등학교에 '영표(○)'로 표시

첨 부 서 류

- 1.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.
- 2.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(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): 아래 중 1부.
 -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
 - 예시 :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,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,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재무 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,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 명하는 서면
 - ②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
 - ③ 기타 : 증명서(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)
 - 증명인이 동리·통장일 경우: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, 원칙적으로 동리·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 -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: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, 증명인의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증사본, 운전면허증사본, 여권사본 중 1부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※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- 3.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.
- 4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5.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: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.

※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한 안내

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(지방법원) 또는 지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의 한정승인: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1. 의
 - 상속포기 :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라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
- 식 한정승인: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. 2. 방
 - 상속포기 :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합니다.
- 3. 신고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(민법 제1019조 제1항)
 -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알지 못 하고 단순승인(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.
- 할 상속개시지[피상속인의 (최후)주소지]관할 법원 4. 관